

# 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983,833,966	29,515,012
일 반 회 계	753,356,580	22,600,697
특 별 회 계	230,477,386	6,914,315
공 기 업 특 별 회 계	99,664,450	2,989,932
○ 상수도사업	70,796,722	2,123,901
○ 하수도사업	28,867,728	866,031
기 타 특 별 회 계	130,812,936	3,924,383
○ 의료급여기금	2,947,788	88,433
○ 도시교통사업	40,905,589	1,227,167
○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	720	21
○ 기반시설	3,998	119
○ 도시재정비촉진	9,320,000	279,600
○ 도시재생	11,342,615	340,278
○ 도시개발	4,779,070	143,372
○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	20,184,760	605,542
○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	19,416,152	582,484
○ 생활폐기물처리시설	21,912,244	657,36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『세입·세출 예산』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65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1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